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군보건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종섭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방부장관이 정한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군인이 전시·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 2항이 개정(22. 2. 3. 공포 및 시행)됨에 따라 「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위임된 사항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 범위 신설(안 제15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 6. 21.~2022. 7. 14.)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(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및 범위)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등에 대한 교육과정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하며, 교육과정 시행을 위해 실시하는 군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.

1. 국군의무학교 응급처치 교육
2. 각 군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
3. 기타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 등의 응급처치 범위”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

1. 환자 의식상태 평가
2. 대량출혈 제어
3. 기도유지, 호흡관리, 환자 순환상태 확인
5. 화상·골절·상처 관리
6. 저체온증 예방
7. 환자운반
8. 기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투현장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응급처치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u>제15조(군 응급처치 교육과정 및 범위)</u> <u>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등에 대한 교육과정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하며, 교육과정 시행을 위해 실시하는 군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.</u> <u>1. 국군의무학교 응급처치 교육</u> <u>2. 각 군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</u> <u>3. 기타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</u> <u>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군인 등의 응급처치 범위”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.</u> <u>1. 환자 의식상태 평가</u> <u>2. 대량출혈 제어</u> <u>3. 기도유지, 호흡관리, 환자 순환상태 확인</u> <u>5. 화상·골절·상처 관리</u> <u>6. 저체온증 예방</u> <u>7. 환자운반</u> <u>8. 기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전투현장 등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응급처치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보건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6641